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3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안 제44조 의7 제1항 제3호의2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6.

다.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황임.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약처에서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SNS에서 일본 1위 관절약을 직수입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업체의 상품이 실제로는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제 체계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제효과도 낮아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

고 행위 등의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 (안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정보’(이하 “허위·과장 광고 등”)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
-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정보</u>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illegible]

다. 검토사항

-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금하는 경우가 있음²⁾).

1)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제1항 각 호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고,
- 제2항 및 제3항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³⁾.

-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6. 삭제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 이를 종합하면, 허위·과장 광고 등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됨.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등 전반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허위·과장 광고 등의 일종인 불법 식·의약품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10,125건, 2023년 11,873건, 2024년 12,090건으로 증가 추세임.

<불법 식·의약품 정보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시정요구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10,187	10,125	11,880	11,873	12,098	12,090

- 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 등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등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미 동일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과장 광고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동조 제3항은 제9호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7일 이내 심의가 가능하므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등은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유통방지 조치가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뿐만 아니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의 불법판매 정보도 개정안에 따른 심의대상 정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련 근거법령이 광범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 대상이 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허위·과장 광고 등은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불법정보로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고, 동조 제3항을 고려할 때 신속심의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도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를 규제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판단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